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76
----------	-----

2022. 1. 20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0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 명확화 (안 제2조제3호)

○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
- 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→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안 제2조제1호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(안 제13조)

○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도록 조항 개정(안 제19조제2항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개의 → 개의(開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”을 “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”를 “국가·지방자치단체·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·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3호 중 “제15조제3항제1호”를 “제16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열며”를 “연 1회 개최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회”를 “개의회(開議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구임대주택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<u>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</u>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사업주체”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·관리하는 「<u>한국토지주택공사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</u>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13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「<u>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</u>」에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구임대주택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「<u>주택도시기금법</u>」 제3조에 따른 <u>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</u>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사업주체”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·관리하는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·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·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</u>를 말한다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「<u>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</u>」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 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제15조제3항제1호</u>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</p> <p>제19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<u>상·하반기</u>로 나누어 연2회 열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, 출</p>	<p>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선출한다</u>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 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16조제3항제1호</u>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</p> <p>제19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정기회의는 <u>연 1회</u>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하</p>

현행	개정안
<p>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
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3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5.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